시보

선 _
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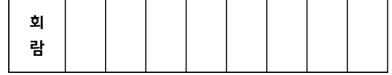
all ways INCHEON

제1984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09호 인천도시계획시설(유수지)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16호 공시송달 공고	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37호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41호 공인등록 공고	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44호 인천광역시「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공모 공고	1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46호 압류자동차 공매결과 공고 ···································	1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50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1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5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1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9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 공고.열람	1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56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실시계획(변경) 공고·열람 ························	2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64호「옹진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안 취소 공고	2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66호 인터넷신문 등의 직권등록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5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429호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	30
입법예고	
	32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46호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인	<u> </u> 44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47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 입법예고	51
입업에고 ····································	!
°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2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군 구	
○ 강화군공고 제2021-1640호 공인 신조 공고 ···································	72
기 타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제2021-296호 관인등록 공고	
인천남동소방서공고 제2021-5호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처분 사전통지」	74
[°] 공시송달 공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6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8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09호

인천도시계획시설(유수지)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자연재난과(☎032-440-3362), 남동구 방재하수과(☎032-453-84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24번지, 366번지 일원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일	비고
신설	유수지1	저류시설	간석동 524	3,978	인고 제2020-341호	대로2-4호선과 중복결정
신설	유수지2	저류시설	간석동 366	2,978	(2020. 09. 14.)	중앙근린공원과 중복결정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도시계획시설(유수지)

【명칭】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6,956㎡(유수지1: 3,978㎡, 유수지2: 2,978㎡)

O 사업규모

- 저류시설 V= 44,400㎡(유수지1: 24,800㎡, 유수지2: 19,600㎡)

- 펌프시설 : 유수지1: 28㎡/min, Φ 500mm×3대, 유수지2: 22㎡/min, Φ 450mm×3대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6.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5개월

7. 열람기간 : 2021. 11. 15. ~ 11. 28.(14일)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 지 소 재 지		면적	(m²)	소 유	자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총 계		40,957.7	6,956		
1	남동구 간석동 524	도	14,400.7	3,978	인천광역시	_
2	남동구 간석동 178-2, 366	공	25,116	2,668	인천광역시	-
3	남동구 간석동 744-3	구	1,276	216	농림축산식품부	_
4	남동구 간석동 746-1	도	165	94	인천광역시	_

9. 지장물 조서 : 별첨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16호

공시송달공고

(국제물류주선업 3차 위반-사업정지 6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물류정책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제(항의 위반업체에 대하여 3차 위반 - 시업정지 60일 행정처분 시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년 11 월 15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분대상업체

연 번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	법인주소	예정된 행정처분 원인
1	664	㈜와이드원	윤**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 번길 13-18, 706호 (송도동, 송도 건원테크노큐브)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0.3.21.)
2	541	다솜로지스틱㈜	신**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6, 에이동 814,815호(신흥동3가,정광씨팰리스)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0.4.21.)
3	569	(주)부성국제로직스	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 번길 16, 105동 2401호(용현동, 용현엑슬루타워)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0.8.19.)
4	761	씨브이글로벌㈜	선**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464번길 7, 2층(선화동)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0.9.22.)
5	191	㈜중산로지스틱스	0 **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33번 길 10 (항동7가)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0.10.1.) 등록기준미신고(6. 28) (신고기한:2020.8.28.)
6	442	㈜명성해운항공	0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172(신흥동3가)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0.12.2.) 등록기준미신고(2.14.) (신고기한:2021.4.14.)
7	314	㈜대운글로벌	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108, 908 (운서동, 비투빌)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1.13.)
8	727	주식회사 삼광로지스틱	김**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안길 20, 101호(청라동)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3.6.)
9	606	우영국제해운㈜	샤**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 101동 1408호(연희동, 청라풍림 엑슬루타워)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2.13.) 등록기준미신고(2.23.) (신고기한:2020.4.25.)
10	637	㈜국제로지스틱스	송**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	신고일(2020.11.10) 등록기준미신고 (신고기한:2021.1.9)
11	760	㈜뉴트랜스포트	두**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로 2(옥련동)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0.9.17.)

- 2. 예정된 행정처분 : 3차 위반 사업정지 60일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하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기인)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5. 의견제출 및 기타 문의
 -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9일 (월) 18:00 까지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1층(구월동) 택시물류과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된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 당 자 : 택시물류과 송영국(032-440-387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37호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1. 11.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1. 15.(월) ~ 2021. 11. 29.(월) 15일간

3. 공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반내용
김*엽	66. 9.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길	2021. 8. 15. 3:00 인천국제공항 3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
이*형	61. 5.1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77번길	2021. 8. 15. 23:30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마스크 미착용(계도 불이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

- 4. 공고내용: 의견 미제출 및 감경 과태료 미납부에 따라 최종 확정된 과태료(100,000) 를 부과하오니 기한내('21.12.31.(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미납부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미납된 과태료 금액의 3% 가산금이 징수되며, 체납된 과태료 미납 시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최대 60개월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 6. 유의사항
 - 가.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과태료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발급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항공과(☎032-440-480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2741호

공인 등록 공고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5,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사유: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정에 따른 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최초사용연월일 : 2021, 11, 15.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참고

등록 공인명 및 인영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관인	출납원인
인천광역시	민천광역시
통도차리사설	토토처리시설
주변지역자원	주변지역지원
기급운용관인	비금출답한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44호

인천광역시「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공고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30호) 공모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리 시와 함께 할 참여자 선정을 위한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

> 2021. 11. 10. 인천광역시장

1. 지원 대상 사업

ㅇ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ㅇ 사업목적 : 지역주도의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스마트 거점 조성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총 3년)

○ 사 업 비 : 3년간 최대 240억원 지원(국·시비)

* 시행자·민간기업의 추가적인 투자 가능

○ 선정규모: 1개 참여자 선정

2. 신청자격

- 공공시행자, 민간기업, 민간기업 + 시행자(민간,공공) 등
 - 민간기업만 응모할 경우, 대상지의 사업시행자 '사업참여확약서' 첨부
 - 다수 업체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공공시행자 단독 참여하여 선정될 경우, 공모선정 이후 민간기업 별도선정

3. 신청방법

- 제 출 일 : 2021년 12월 1일(수) 18:00까지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담당관실
 - 담당자: 심왕보 팀 장(☎ 032-440-8926, wangbos@korea.kr)
 - 담당자: 박은영 주무관(☎ 032-440-8928, eypark330@korea.kr)
- ㅇ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IDC센터 3층 (312호)

< 제 출 서 류 >

- ① 공모 신청서 원본 1부(공공시행자, 민간기업 등 대표자 직인 날인)
- * 각 신청자는 공동 참여하는 시행자 민간기업이 있는 경우 기관명을 공모신청서에 명시
- ②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계획서(원본) 1부
- ③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계획서(평가용) 7부
 - 평가용은 참여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 ④ 원본 파일(USB 또는 CD 등에 저장)
-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공모 지침(별첨) 참고

5. 유의사항

○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시간 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 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 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담당관실(박은영 주무관, 032-440-8928, evpark330@korea.kr)에 문의

【별첨】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지침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46호

압류자동차 공매결과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 「지방세징수법」제71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번호 : 제2021-2542호(2021.10.15)

2. 공매대상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총 80대)

3. 관계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제78조

4. 결과공고 : 인천시보 및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홈페이지 게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시보⇒압류자동차 공매결과 공고 클릭)

5. 공고기간 : 2021.11.10.(수) 16:00 ~ 2021.11.16.(화) 18:00

6. 입찰등록 : 2021.11.02.(화) ~ 2021.11.09.(화) 14:00

7. 낙찰발표 : 2021.11.10.(수) 14:00

8. 공매결과 : 공매공고 차량 80대중 낙찰 79대, 보류 1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협력담당관 자동차공매 담당 주무관 박은영 (032-440-8444, 8445)에게 문의바랍니다.

자동차 공매낙찰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가격(원)	매각낙찰가격(원)	비고
1	11나2097	스포티지	2007	400,000	2,300,000	
2	30수2166	체어맨	2013	2,400,000	3,999,000	
3	70나1147	봉고Ⅲ코치	2004	240,000	833,000	
4	48러3344	SM5 LPLi	2007	450, 0 00	750,000	
5	2540618	QM3	2015	5,400,000	8,177,000	
6	61 맥4903	체어맨	2011	1,350,000	1,400,000	
7	60오7958	라세티 1.6 DOHC	2011	450,000	1,675,000	
8	95 ^{II} +2852	봉고 <u>Ⅲ1.2</u> 톤	2012	700,000	2,000,000	
9	020/6172	렉스턴	2006	700,000	868,000	
10	09구4055	스포티지	2007	600,000	1,223,000	
11	09보9941	옵티마	2000	500,000	1,399,000	
12	10조3089	투스카니(TUSCANI)	2007	500,000	800,000	
13	11年6850	SM3	2008	500,000	1,253,000	
14	16라6947	모닝	2013	2,000,000	4,150,000	
15	16주5040	모닝	2013	2,000,000	4,780,000	
16	18나6383	B MW520i	2004	600,000	919,000	
17	18 ¹ 6623	그랜저(GRANDEUR)	2006	600,000	1,055,000	
18	18대1949	익스플로러	2015	14,000,000	14,850,000	
19	18우1966	프라이드	2008	300,000	880,000	
20	19라1723	스파크밴1.0DOHC	2012	500,000	1,230,000	
21	20덕2231	SM5LPLi	2009	500,000	730,000	
22	24보2725	쏘나타(SONATA)	2014	1,000,000	3,510,000	
23	2578035	Phaeton3.0TDI	2011	3,000,000	4,180,000	
24	25나5024	갤로퍼2승합	1997	500,000	1,067,000	
25	26대1650	짚그랜드 <mark>체로키</mark>	2011	5,000,000	5,820,000	
26	26수4187	그랜저(GRANDEUR)	2011	2,500,000	5,131,000	
27	26个5070	베라크루즈(VERACRUZ)	2007	700,000	4,652,000	
28	26조4102	싼타페	2004	600,000	833,000	
30	27대8115	그랜저(GRANDEUR)	2005	600,000	2,199,000	

자동차 공매낙찰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가격(원)	매각낙찰가격(원)	비고
31	28972191	카니발	2019	15,000,000	20,777,000	
32	28도4861	투싼	2019	17,000,000	21,100,000	
33	31루0534	제네시스(GENESIS)	2016	15,000,000	16,359,000	
34	31루5482	싼타페(SANTAFE)	2008	700,000	2,200,000	
35	33 도4 435	QM5	2008	700,000	1,200,000	
36	343보1937	쏘나타(SONATA)	2016	2,000,000	4,650,000	
37	36서1887	렉서스ES330	2005	600,000	1,460,000	
38	36수7729	벨로스터	2012	800,000	4,300,000	
39	398러6878	에쿠스(EQUUS)	2010	3,000,000	5,620,000	
40	40서5275	그랜저(GRANDEUR)	2007	600,000	1,111,000	
41	42 <mark>년</mark> 4207	그랜저(GRANDEUR)	2009	600,000	1,030,000	
42	42대8737	SM5LPLi	2011	1,000,000	2,268,000	
43	45우6188	투싼(TUCSON)	2007	500,000	1,260,000	
44	46구9945	모닝	2015	3,000,000	5,001,000	
45	48소4324	SM525V	2004	500,000	799,000	
46	49라2232	쏘렌토	2018	17,000,000	23,100,000	
47	500 0886	Explorer 23 AWD	2016	18,000,000	22,610,000	
48	50우4937	렉서스LS460L	2008	700,000	2,250,000	
49	50저9272	렉스턴	2006	700,000	1,010,000	
50	52도4400	베라크루즈(VERACRUZ)	2007	1,000,000	4,317,000	
51	54로4475	카니발	2019	21,000,000	28,390,000	
52	55도3644	티볼리	2018	10,000,000	13,520,000	
53	56부2430	MURANO	2011	3,500,000	3,580,000	
54	58부6773	에쿠스(EQUUS)	2009	1,500,000	1,750,000	
55	60서7777	쏘나타(SONATA)	2011	700,000	2,120,000	
56	62 ^円 5136	SM5	2011	2,000,000	12 60 50 50 122	
57	63저4349	아반떼(AVANTE)	2014	4,000,000	8,136,000	
58	64약3416	A4 20 TDI quattro	2013	3,000,000	100 100 100	
59	64무6408	제네시스	2008	2,500,000	3,279,000	
60	66년3060	윈스톰20S디젤	2008	600,000	V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자동차 공매낙찰 목록

면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가격(원)	매각낙찰가격(원)	비고
61	66 [□] +5879	A63.0TFSIQuattro	2010	2,000,000	2,222,000	
62	67머2551	아반떼하이브리드(AVANTEHYBRID)	2010	700,000	2,380,000	
63	69부9623	아토스	1998	250,000	500,000	
64	70라7200	그랜드스타렉스(GRANDSTAREX)	2015	8,000,000	10,780,000	
65	71모5837	그랜드 카니발	2011	2,500,000	4,250,000	
66	72루4248	그랜드스타렉스구급차(GRANDSTAREX)	2017	13,000,000	19,100,000	
67	78라8300	그랜드스타렉스(GRANDSTAREX)	2014	5,000,000	5,260,000	
68	81우1319	포터II(PORTERII)	2010	700,000	1,836,000	
69	82덕6213	포터피(PORTERII)	2015	3,500,000	7,650,000	
70	83 \(\frac{4256}{} \)	코란도스포츠	2017	11,000,000	15,100,000	
71	83저8750	XW500	2015	500,000	1,899,000	
72	86로8282	포터II(PORTERII)	2017	7,000,000	11,439,000	
73	86조9349	봉고Ⅲ1톤	2016	5,000,000	7,268,000	
74	88도9479	포터II(PORTERII)	2016	4,500,000	9,789,000	
75	91소8680	봉고 <u>□1.2</u> 톤	2016	7,000,000	13,339,000	
76	94년6704	포터II(PORTERII)	2018	8,500,000	12,150,000	
77	95 ¹ 0413	코란도스포츠	2018	9,000,000	11,200,000	
78	96世9613	봉고Ⅲ1톤	2016	4,500,000	7,120,000	
79	96보0272	렉스턴스포츠	2019	16,500,000	24,510,000	
80	인천32너2908	렉스턴	2003	600,000	925,00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50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2021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장

1. 공고기간: 2021. 11. 15.~2021. 11. 29.(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체명 (대표자)	처분업종	소재지	처분사유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근거
더봄종합건설(주) (김문규)	건축공사업 (10-30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 39, 2층 (도화동)	영업정지처분 종료일 기준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2018년도 자본금 미달)	「건설산업 기본법」 제10조	등록말소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

-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032)440-3742로 문의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5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등록 사항

등록번호	단체명	변경사항	(소재지)	주된 사업	대표자	
중국인모	인 세 경	변경 전	변경 후	구선 가입		
제 2007-0- 인천광역시 -7호	노동자 교육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 부영빌딩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425, 인예교육원 4층	○ 노동자교육사업	원 권 식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9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9호선) 사업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69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광로3-9호선)

O 명칭: 석남동 물류센터 주변도로(광로3-9호선)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광로3-9호선, L=137m, B=32~55m(1차로 확장, 완화차선)

4. 시행자 성명 및 주소

O 성명: 아시아신탁주식회사 대표 배일규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과 같음.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붙임과 같음.
- 8.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O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 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23),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3)
-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용 지 조 서

○시설명: 광로3-9호선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 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변호	조세지	시킨	마	(m²)	រា (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 계	(지분)
1	석남동	223–508	유	25	25	戌0	인천광역시				
2	석남동	223-896	잡	64	64	FIO	인천광역시				
3	석남동	223–693	잡	1,844	40	0Ы이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4	석남동	223-504	잡	116	64	FIO	인천광역시				
5	석남동	223–897	잡	173	98	구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56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실시계획(변경) 공고 열람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42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 종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 명칭: (기정)강화 선두리골프장 조성사업,

(변경)강화 웰빙CC리조트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5	²)	구성비(%)	
		기정	변경	중감	7/8 41(%)
총	· 계	245,000	245,000	-	100.00
체육	·시설용지	55,820	50,729	감)5,091	20.71
건축시설용지		5,940	2,008	감)3,932	0.82
기반	·시설용지	21,192	20,121	감)1,071	8.21
	소 계	162,048	172,142	증)10,094	70.26
녹지 용지	완충녹지	72,481	82,575	증)10,094	33.70
용지	복원녹지	16,872	16,872	_	6.89
	원형 녹지	72,695	72,695	_	29.67

※ (변경사유) 창고 등 건축계획 축소, 마운딩 축소, 수목 추가식재 등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성명: (기정)㈜강호개발 대표이사 오진국 (변경)㈜강호개발 대표이사 김영만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산리 14-1번지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2013. 9. 13. ~ 2021. 12. 31.
 - (변경)2013. 9. 13. ~ 2022. 3.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9.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2, 남동구 정각로 29)
 -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807,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 10. 관계서류: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64호

「옹진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안 취소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2291(2020. 10. 26.)호로 공고한 '옹진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부결됨에 따라 입안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 취소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부결
 ⇒ 기존 용도지역(농림지역) 존치
 - (당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위 치: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 변경내용: (기정) 농림지역 → (변경) 보전관리지역(85,319㎡)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032-440-4613) 및 옹진군 도서주거개선과(☎ 032-899-3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766호

인터넷신문 등의 직권등록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 2항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직권등록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발행인(대표자)에게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발행인(대표자)께서는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취소 처분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 중단
- 3. 법적근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
- 4. 청문실시
 - 가. 일 시 : 2021. 12. 8(수), 10:00~16:00
 - 나. 장 소 : 인천광역시청 소회의실(본관 지하1층)
 - 다.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최미나 사무관
- 5. 청문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 6. 청문시 유의사항
 -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발행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나.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서류 : 의견제출서, 발행인의 주민등록증사본(앞 뒷면 각 1부)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 (등기우편)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청 대변인실 김의호 주무관 앞
- (방문제출) 인천광역시청 대변인실
- 제출기한 : 2021. 12. 7(화)까지
- 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 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라.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청문 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마.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7. 공고기간 : 2021. 11. 12. ~ 11. 26.(15일간)
-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대변인실(☎032-440-3055 김의호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제 호	등록번호	등록일	발행인(대표자)	주민등록 주소	반송사유	청문일시
1	한국푸른쉼터신문	아000013	2007.01.24.	(사)한국푸른쉼터신문 이주열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번길 **	폐문부재	2021.12.08.(수) 10:00~11:00
2	인천티비	아01028	2009.11.06.	정인태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 ***호 (구월동, ****오피스텔)	수취인불명	2021.12.08.(수) 10:00~11:00
3	뷰티플코리아뉴스	아01049	2010.10.01.	황광운	서울특별시 중랑구 답십리로**길 **, *층 ***호(면목동)	폐문부재	2021.12.08.(수) 10:00~11:00
4	뉴스보이스	아01073	2011.12.26.	강영준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 ***동 ****호(아름동, ******단지)	폐문부재	2021.12.08.(수) 10:00~11:00
5	한국환경일보	아01077	2012.02.17.	한국해상재난환경구조단 경인지부 복 장 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길 **(방배동)	폐문부재	2021.12.08.(수) 10:00~11:00
6	부평교육뉴스	아01107	2012.11.20.	이창우	강원도 원주시 포란재로 **, ***동 ***호 (태장동, *****아파트)	폐문부재	2021.12.08.(수) 10:00~11:00
7	틈새 비지니스 신문	아01135	2013.07.24.	강두현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 ***동 ***호(원당동, ******아파트)	폐문부재	2021.12.08.(수) 14:00~15:00
8	동아뉴스방송	아01165	2013.11.21.	조희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로*번안길 *	수취인부재	2021.12.08.(수) 14:00~15:00
9	시민뉴스	아01218	2015.02.13.	서삼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아치로**번길 *, ***동 ****호(우현동, ******)	폐문부재	2021.12.08.(수) 14:00~15:00
10	에듀매거진	아01229	2015.04.09.	㈜아이엠마더 황애영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	폐문부재	2021.12.08.(수) 15:00~16:00
11	검경합동뉴스	아01253	2015.09.07.	㈜늘푸른신문 이승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길 ***-**, ***동 *층 ***호(신당동, **아파트)	수취인불명	2021.12.08.(수) 15:00~16:00
12	미디어인천	아01284	2017.01.05.	청소년단체협동조합 박윤이한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입석로 **, ***동 ***호(****아파트)	폐문부재	2021.12.08.(수) 15:00~16:00

제198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21. 11. 15.(월요일)

연번	제 호	등록번호	등록일	발행인(대표자)	주민등록 주소	반송사유	청문일시
13	대한축구신문사	아01302	2017.04.18	양상승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로**번길 **-*(십정동)	수취인불명	2021.12.08.(수) 15:00~16:00
14	데일리인천	아01331	2018.01.29.	김영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번길 **-**(주안동)	이사불명	2021.12.08.(全) 15:00~16:00
15	KNB방송	아01361	2018.10.02.	㈜비즈와이 남소영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번길 **-*, ***동 ***호(쌍령동, ***)	폐문부재	2021.12.08.(수) 15:00~16:00
16	라이브스코어	자00016	2014.04.23.	유정훈	강원도 원주시 토지길 *(단구동)	폐문부재	2021.12.08.(수) 15:00~16:00
17	링크뉴스	자00015	2014.04.23.	유정훈	강원도 원주시 토지길 *(단구동)	폐문부재	2021.12.08.(수) 15:00~16:00

		[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이래의 규의사항	을 읽고 작성하시기 비랍 성명	기다.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치	-법」 제27조제1	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우	와 같이 의견을 제출힙	나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429호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 되어 추진한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사업명칭 :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3. 시행기간 : 2001. 1. 29. ~ 2021. 12. 31.

4. 사업면적 : 당초 75,119㎡, 변경 74,532.9㎡(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5. 사업계획에 의한 공종별 공사시행 내역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비고
1	T.	단케	계획	실 적	계획	실 적	H T
1. 택지조성 및 도로 등	기반시설						
	절 토	m³	40,274	40,274	57,031	57,031	
가. 토 공	성 토	m³	118,251	118,251	143,145	143,145	
	순성토	m³	77,977	77,977	0	0	
나. 배 수 공	우 수 관	m	1,386	1,386	1,343	1,343	
다. 배 구 중	오 수 관	m	771	771	771	771	
다. 포 장 공	ASP 포장	m²	11,326	11,326	11,383	11,383	
나. 포 경 등	보도포장	m²	1,511	1,511	1,663	1,663	
라. 상수도공	D100~D200	m	1,194	1,194	1,425	1,425	
마. 연약지반처리공		m²	17,020	17,020	19,426	19,426	
바. 부 대 공		식	1	1	1	1	
2. 가로등 설치	가로등, 보안등	식	1	1	1	1	
3. 공원,녹지 조성	공원, 녹지	식	1	1	1	1	

2021. 11. 15.(월요일)

6. 사업비 정산내역

구 분	명 칭	금 액	비고	
1 U	0 '0	당 초	변경	7 7
	계	11,650,000	15,387,115	
수 입	보 조 금 등	0	0	
	과도지, 체비지매각 등	11,650,000	15,387,115	
	계	11,650,000	15,387,115	
1 - - 7	공 사 비	7,782,163	7,016,928	
지출	보 상 비 등	1,760,000	1,758,093	보상비
	기 타	2,107,837	6,612,094	업무비, 부담금 및 향후투자

- ※ 개략사업비로 환지처분(청산)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7.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기타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6항과 동일)
- 8. 공람기간 : 2021. 11. 15. ~ 2021. 11. 30.
- 9. 기타사항

관계도서 등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팀(032-440-5182)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51호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 지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1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말 사용 장려를 위해 '도서'를 '섬'으로 바꾸는 「도서개발 촉진법」이 「섬 발전 촉진법」으로 개정되어,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조례에 맞게 용어 변경을 하고,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도심 대중교통과의 비용적 형평성 확보로 섬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요금을 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도 서'를 '섬'으로, '도서민'을 '섬지역 주민'으로 용어 변경

나. 섬지역 주민의 여객운임을 대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 원의 본인부담금 초과액에 대한 지원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도서지원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310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재민(전화 032-440-4982, FAX 440-8698, E-mail petals34@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incheon.go.kr, 고시공고 메뉴)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도서지역"을 "섬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서지역"을 "섬지역"으로, "도서민"을 "섬지역 주민"으로 한다.

제3조 중 "도서민"을 "섬지역 주민"으로, "도서"를 "섬"으로 하며,

제3조제1항제1호 중 "승선일 당일 정규운임의 50퍼센트"를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 집행지침」(이하 "해양수산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 금액"으로 제2호 중 "제1호와 내항 여객선사의 자체 할인율을 적용하고도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이하 "해양수산부 지침"이라 한다)의 기준운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제1호를 적용하고도 섬지역 주민 1인당 지원액(대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도서"를 "섬",으로, "도서지역"을 "섬지역"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강화군수·옹진군수와 중구청장(이하 "군수·구청장"이라 한 다)은"을 "강화군수·옹진군수(이하 "군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군수·구청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 제1조(목적) -----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 섬지역------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 운임지원 기준) ① 제2조(시민 운임지원 기준) ①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 섬지역 -----운임 등 지원 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여객선(도선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이용 시민에 대 한 1인당 운임 지원금은 승선일 당일 정규운임(내항 여객선과 도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 임을 말하며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의 70페센트로 한다. 다만, 시민에 대한 1인당 운임지 원금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서 민에 대한 1인당 운임지원금을 지역 주민에-----초과할 수 없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저]3조(<u>도</u>	<u> -서민</u>	운임	등 7	시원	기き	준)
	① Z	:례 저	3조제	레2항의	의 구	구정	에
	따른	여객선] 0]-	용 <u>도</u>	서민	<u>에</u>	대
	한 1인]당 운	임지	원금은	은 다	음	각
	호의	금액을	을 합	산한	급이	백으	로
	산정혀	하되 , 10)()원	미만	금액	은	절
	상한다	7.					

- 선트
- 지팀"이라 한다)의 기준운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액
- ② 도서민 운임지원금의 지원대 상 여객선운항 도서는 인천광역 시 관내 전 도서로 한다.
- ③ 도서민에게는 조례 제3조제2 항에 따라 차량운임 및 여객터 미널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한 다. 이 경우, 차량운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

베3조(<u>섬지역 수민</u> 운임 능 지원
기준) ①
<u>섬지역 주민에</u>

- 1. 승선일 당일 정규운임의 50페 1.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 선 운임 지원 집행지침」(이 하 "해양수산부 지침"이라 한 다)에 따른 지원 금액
- 2. 제1호와 내항 여객선사의 자체 2. 제1호를 적용하고도 섬지역 할인율을 적용하고도 해양수산 | 주민 1인당 지원액(대인 1,250 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 집행지침 | (이하 "해양수산부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② <u>섬시역 주민</u>
<u>섬은</u>
<u>섬으로</u>

3	<u>섬지</u>	역 즉	<u> </u>	 	
_				 	
_				 	
_				 	

지침을 따른다.	
제3조의2(타 시·도민 운임지원 기	제3조의2(타 시·도민 운임지원 기
준) ① (생 략)	준) ① (현행과 같음)
1. 방문객: 인천광역시 내의 <u>도서</u>	1 섬에
<u>에</u> 방문하는 타 시·도민으로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군장병 면회객: 인천광역시 내	2
의 <u>도서에</u> 주둔한 군대에 복무	<u>섬에</u>
하는 군장병을 면회오는 타 시	
도민으로서 해당 군부대장의 확 인을 받은 사람	
	ρ λ ι σὶ ἀι
3. <u>도서지역</u> 출향민: 인천광역시 내의 도서를 떠난 타 시·도민으	3. <u>섬 지역</u> 서울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최초 등록기준지를 인천광역	 フト
시 내의 <u>도서에</u> 두고 있거나 두	
었던 사람	
나. 인천광역시 내의 <u>도서에</u> 주민	나 섬에
등록상 주소지를 10년 이상 두	
었던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u>도서지역</u> 출향민: 승선일 당일 3. <u>섬 지역</u> -----

정규운역	임의 703	퍼센트	이하의	범
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 금액	

③ 타 시·도민 운임지원금 지원 대상 여객선 운항 <u>도서는</u> 인천 광역시 내의 모든 <u>도서로</u>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 객의 경우에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덕적 도 및 자월도로 하되, 편도 정규 운임이 1만원 이상인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전산매표 및 부정승선 방 지) ①~③ (생 략)

제5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① <u>군수·구청장은</u>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는 연안여객선 운송약관에 규정된 부정 승선자 대상 운임 징수액을 여객선사가 징수하도

③
지4조(전산매표 및 부정승선 방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5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 재) ① <u>군수는</u>

록 조치하고,	여객선사로부터
운임지원액을 :	환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릭	=)
제6조(준용) (생	략)
제7조(운영세칙)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준용)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섬 발전 촉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2호, 2020.12.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제명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변경

- □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시행 2021. 11. 8.] [조례 제6729호]
- 개정이유

「섬 발전 촉진법」변경으로 "도서"를 "섬"으로, "도서민"을 "섬 주민"으로 변경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요인
 - 섬지역 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운임으로 추가 지원 비용 추가 발생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 부개정규칙안(안 제3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섬지역 주민의 이용현황(2019년 기준)

구 분	계	8,340원 미만 (생활 구간)	8,340원 ~ 3만원	3만원 ~ 5만원	5만원 초과
섬 주민 이용	474,549 명	245,041명	101,773명	46,025명	81,710명
누계(비율)	(100%)	(52%)	(21%)	(10%)	(17%)

나. 추계 결과 : 615,000천원

2019년 지원액	시내버스요금 적용 시	추가소요액	운임지원 관리시스템	비고
7,871,758	9,041,758	1,170,000 (시비 585,000)	30,000	버스요금 적용분 시·군 매칭(50:50)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 본예산 반영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해양항공국 도서지원과장 전상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소계						
رار ر ارر	일반회계	615,000	615,000	615,000	615,000	615,000	3,075,000
세출	소계	615,000	615,000	615,000	615,000	615,000	3,075,000
재원 조달		615,000	615,000	615,000	615,000	615,000	3,075,000
국 비							
	소 계	615,000	615,000	615,000	615,000	615,000	3,075,000
시비	일반회계	615,000	615,000	615,000	615,000	615,000	3,075,000
714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585,000	585,000	585,000	585,000	585,000	2,925,000
민 간							
기 타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46호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O 당뇨병은 각 유형별로 발생 원인과 특성,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여 당 뇨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O 이에 따라 혈당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당뇨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 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advanced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가.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붙임1)
- 다. 비용추계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당뇨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만성질환	제7조(지원사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당뇨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
	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
	<u>비 지원</u>
<u>7</u> . (생 략)	<u>8</u> . (현행 제7호와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어은"

관련법령 발췌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 (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2019. 12. 3.>
 -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 2. 영양관리
 - 3. 신체활동장려
 - 4. 구강건강의 관리
 -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 · 연구
 -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 발생 요인
- 시장은 인천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므로 재정수반요인이 있음.(조례 제10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 제7조 ~ 제10조에 따라 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또는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동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지원기준이 불비하여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4. 작성자 :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장 정 혜 림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47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 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O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 체제를 확립함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O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시장과 관리주체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O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4조).
- O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권고 및 지원을 규정(안 제5조).
- O 입주자 등에 대한 옥상 대피 교육 및 훈련을 규정(안 제6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thisman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2-440-621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0주 소:			
○성 명: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 O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O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주택"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상 대피가 가능한 공동 주택을 말한다.
-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의 관계인으로서 「소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화재 시 효율적인 피난 안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옥상 피난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옥상 피난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군·구,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권고 및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훈련)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하여 옥상 대 피에 필요한 시설 사용안내 등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등에 관하여 군 구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소방기본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 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 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 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46조(감독) ①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 2.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 3. 제26조에 따른 관리사
 - 4.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 5. 제37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 6.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 7.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 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 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 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 2.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 3.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 4.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 5.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 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 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 7.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 8.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 9.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 10.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 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 을 말한다.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 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다.

1. 공연장·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관람장·운동	
시설 2.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 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 O대형피난구유도등 O동로유도등 O객석유도등
 위략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관광진홍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 의료시설 · 장례식장 · 방송통신시설 · 전시장 · 지하상가 · 지 하철역사 	O대형피난구유도등 O통로유도등
4. 숙박시설(제3호의 관광숙박업 외의 것을 말한 다)·오피스텔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미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인생활 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 발전시설 · 종교시 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 · 교육연 구시설 · 수련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 사시설(국방 · 군사시설 제외) · 기숙사 · 자동차정 비공장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다중이용업소 · 복합건축물 · 아파트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7. 그 밖의 것	○피난구유도표지 ○롱로유도표지

※ 비교:

- 1.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며 대형피난구유도등 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2.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워【(안) 제5조】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1)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물가상승률은 배제함
 - 2) 옥상피난설비를 관리주체에게 권고 및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 재정이 수반됨
 - 나. 추계 결과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시는 향후 5년간 공동주택 7,885개 동에 1,7 34백만원¹⁾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 2개 업체 견적서 중 관련 고시²⁾에 적합한 단가 적용 ※ 지원규모, 지원범위, 규격서에 따라 비용이 변동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시(100%) 부담
-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1
- 4. 작성자 :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정상기

^{1) 1}개동 220,000원 × 7,885동(공동주택) = 1,734,700,000원

²⁾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1 1				(1 - 6 6/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시비	_	_	_	_	_	_
	소계	_	_	_	_	_	_
세출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346,940	346,940	346,940	346,940	346,940	1,734,700
	소계	346,940	346,940	346,940	346,940	346,940	1,734,700
z z	내원 조달	_	_	_	_	_	_
<u>-</u>	건 비	_	_	_	_	_	_
	소 계	346,940	346,940	346,940	346,940	346,940	1,734,700
시비	일반회계	_	_	_	_	_	_
^	특별회계	346,940	346,940	346,940	346,940	346,940	1,734,700
	기 금	_	_	_	_	_	_
-1	군・구비		-	_	_	-	_
	민 간		_	_	_	_	_
	기 타	_	_	_	_	_	_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1-303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학교 현장 지원 인력 확대를 통한 내실 있는 교육서비스 제공
- 나. 서구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사업종료에 따른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직종 조정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 조정(안 제4조제2항, 안 별표1)
 - 정원: 6,714명 → 6,836명 (122명 증원)
- 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직종 일부 조정(안 제8조제2항, 안 별표2)
 - 채용직종: 37개 직종 → 36개 직종 (△1개 직종)
 - ※ 폐지직종(1개 직종) : 영어센터부장

3. 의견제출

본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 노사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 p://law.ic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 노사협력과
 - 우편번호 및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 전화)032-420-8329, 팩스)032-420-8338
 - 전자우편(이메일): doldam@ice.go.kr
-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1]
- 5. 일부개정규칙안: [붙임2]

[붙임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행정절차법」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교육감(노사협력과장) 귀하

[붙임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 (제4조제2항 관련)

(단위: 명)

A-1 11	7) Z H			정원 총수		
연번	직 종 명	공립학교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합 계
1	교무실무사					
2	과학실무사					
3	전산실무사	1,189	0	5	11	1,205
4	행정실무사	1,100	U	J	11	1,200
5	구 육성회직원					
6	교무행정실무사(통합)					
7	공연장운영보조요원	0	0	0	3	3
8	과학관해설사	0	0	0	6	6
9	교육복지사	139	1	21	0	161
10	당직전담직원	1	0	0	0	1
11	방과후지원센터관리자	0	1	5	0	6
12	사서(사서실무원)	162	0	0	2	164
13	영양사	184	0	0	0	184
14	유치원교육실무원	349	0	0	0	349
15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513	0	0	0	513
16	전문상담사	178	13	9	0	200
17	조리실무사	2,653	0	0	0	2,653
18	초등돌봄전담사	625	0	0	0	625
19	치료사	0	1	7	0	8
20	통학차량실무원	23	0	0	0	23
21	특수교육실무사	636	0	0	0	636
22	특수진로코디네이터	11	0	1	0	12
23	특수학급종일제강사	60	0	0	0	60
24	평생교육사	0	0	5	16	21
25	학부모상담사	0	0	5	0	5
26	향토사	0	0	0	1	1
	합 계	6,723	16	58	39	6,836

[별표2]

교육감 소속 근로자 직종(제8조 관련)

연번	직 종 명	연번	직 종 명
1	교무실무사	20	통학차량실무원
2	과학실무사	21	특수교육실무사
3	전산실무사	22	특수진로코디네이터
4	행정실무사	23	특수학급종일제강사
5	구 육성회직원	24	평생교육사
6	교무행정실무사(통합)	25	학부모상담사
7	공연장운영보조요원	26	향토사
8	과학관해설사	27	급식배식원
9	교육복지사	28	기업회계직원
10	당직전담직원	29	도서관연장운영인력
11	방과후지원센터관리자	30	사감
12	사서(사서실무원)	31	시설관리실무원
13	영양사	32	원어민코디네이터
14	유치원교육실무원	33	장애교사보조인력
15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34	청소원
16	전문상담사	35	취업지원관
17	조리실무사	36	학교운동부지도자
18	초등돌봄전담사		
19	치료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	班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					1	
(제4조제2항 관련	.)	(제4조제2항 관련)					
	(단위: 명)				([단위:	: 명)
지 종명 공립 본 교	총수 '육 직속 원청기관 합계	연 번	직 종 명	공립 학교	정원 총 본 교육 청 자원청	직속	합계
1 교무실무사		1	교무실무사				
2 과학실무사		2	과학실무사	1			

연 번	직 종 명	공립	본	교육			연 번	직 종 명	공립		교육		
빈		학교		지원청		합계	빈		학교	l	지원청		합계
1	교무실무사						1	교무실무사					
2	과학실무사						2	과학실무사					
3	전산실무사	1,174	0	5	99	1,201	3	전산실무사	1,189	0	5	11	1 205
4	행정실무사	1,174	U	၂	22	1,201	4	행정실무사	1,189	0	၂ ၁	11	1,205
5	구 육성회직원						5	구 육성회직원					
6	교무행정실무사(통합)						6	교무행정실무사(통합)					
7	공연장운영보조요원	0	0	0	3	3	7	공연장운영보조요원	0	0	0	3	3
8	과학관해설사	0	0	0	6	6	8	과학관해설사	0	0	0	6	6
9	교육복지사	127	1	9	0	137	9	교육복지사	139	1	21	0	161
10	당직전담직원	2	0	0	0	2	10	당직전담직원	1	0	0	0	1
11	방과후지원센터관리자	0	1	5	0	6	11	방과후지원센터관리지	0	1	5	0	6
12	사서(사서실무원)	162	0	0	2	164	12	사서(사서실무원)	162	0	0	2	164
13	영양사	185	0	0	0	185	13	영양사	184	0	0	0	184
14	유치원교육실무원	349	0	0	0	349	14	유치원교육실무원	349	0	0	0	349
15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468	0	0	0	468	15	유치원방과후과정강시	513	0	0	0	513
16	전문상담사	178	13	5	0	196	16	전문상담사	178	13	9	0	200
17	조리실무사	2,653	0	0	0	2,653	17	조리실무사	2,653	0	0	0	2,653
18	초등돌봄전담사	610	0	0	0	610	18	초등돌봄전담사	625	0	0	0	625
19	치료사	0	1	7	0	8	19	치료사	0	1	7	0	8
20	통학차량실무원	30	0	0	0	30	20	통학차량실무원	23	0	0	0	23
21	특수교육실무사	606	0	0	0	606	21	특수교육실무사	636	0	0	0	636
22	특수진로코디네이터	11	0	1	0	12	22	특수진로코디네이터	11	0	1	0	12
23	특수학급종일제강사	50	0	0	0	50	23	특수학급종일제강시		0	0	0	60
24	평생교육사	0	0	5	16	21	24	평생교육사	0	0	5	16	21
25	학부모상담사	0	1	5	0	6	25	학부모상담사	0	0	5	0	5
26	향토사	0	0	0	1	1	26	향토사	0	0	0	1	1
	합 계	6,605	17	42	50	6,714		합 계	6,723	16	58	39	6,836

[별표2]

교육감 소속 근로자 직종(제8조 관련)

직 종 명	연 번	직 종 명
교무실무사	20	통학차량실무원
과학실무사	21	특수교육실무사
전산실무사	22	특수진로코디네이터
행정실무사	23	특수학급종일제강사
구 육성회직원	24	평생교육사
교무행정실무사(통합)	25	학부모상담사
공연장운영보조요원	26	향토사
과학관해설사	27	급식배식원
교육복지사	28	기업회계직원
당직전담직원	29	도서관연장운영인력
방과후지원센터관리자	30	사감
사서(사서실무원)	31	시설관리실무원
영양사	32	영어센터부장
유치원교육실무원	33	원어민코디네이터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34	장애교사보조인력
전문상담사	35	청소원
조리실무사	36	취업지원관
초등돌봄전담사	37	학교운동부지도자
치료사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전산실무사 행정실무사 구 육성회직원 교무행정실무사(통합) 공연장운영보조요원 과학관해설사 교육복지사 당직전담직원 방과후지원센터관리자 사서(사서실무원) 영양사 유치원교육실무원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전문상담사 조리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교무실무사 20 과학실무사 21 전산실무사 23 행정실무사 23 구 육성회직원 24 교무행정실무사(통합) 25 공연장운영보조요원 26 과학관해설사 27 교육복지사 28 당직전담직원 29 방과후지원센터관리자 30 사서(사서실무원) 31 영양사 32 유치원교육실무원 33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34 전문상담사 35 조리실무사 36

[별표2]

교육감 소속 근로자 직종(제8조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연 번	직 종 명	연 번	직 종 명
1	교무실무사	20	통학차량실무원
2	과학실무사	21	특수교육실무사
3	전산실무사	22	특수진로코디네이터
4	행정실무사	23	특수학급종일제강사
5	구 육성회직원	24	평생교육사
6	교무행정실무사(통합)	25	학부모상담사
7	공연장운영보조요원	26	향토사
8	과학관해설사	27	급식배식원
9	교육복지사	28	기업회계직원
10	당직전담직원	29	도서관연장운영인력
11	방과후지원센터관리자	30	사감
12	사서(사서실무원)	31	시설관리실무원
13	영양사	32	원어민코디네이터
14	유치원교육실무원	33	장애교사보조인력
15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34	청소원
16	전문상담사	35	취업지원관
17	조리실무사	36	학교운동부지도자
18	초등돌봄전담사		
19	치료사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4조(정원) ○ 제5조(채용) ○ 제9조(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발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하기에 쉽고 적합하도록 조직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4조(정원)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채용)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근로자를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 ③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 등으로 정한다.

군 구

강화군공고 제2021-1640호

공인 신조 공고

강화군 공인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10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1.

강 화 군 수

○ 신 조 공 인

구분	공인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신조사유	사용일	비고
신조	강화군재무관인 리비교 2.0	한글 전서체 2.0cm×2.0cm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2021.11.11.		
(건호.	주차장특별회계 강화군분임재무관인	后面的原 后面设置 后面设置 后面设置	한글 전서체 2.0cm×2.0cm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21.11.11.	

기 타

관인등록 공고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제2021-296호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0.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장 ○ 최초 사용 개시일: 2021. 11. 16.

[관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장인



인천남동소방서공고 제2021-5호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25조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인천남동소방서장

- 1. 공고문명 :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처분 사전통지」공시송달
- 2. 공시송달 대상자 : 청실프라자(동암남로26번길 39) 소유자 강*미 등 125명
-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2차 조치명령서
- 4. 의견제출기한 : 2021년 12월 10일까지
- 5. 공고내용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2차 조치명령서
- 당사자
 - 성 명 : 청실프라자 소유자 강*미 등 125명(**붙임1 참조**)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남로26번길 39
- 워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내용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화재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조치명령**(붙임2 참조)**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 의견 제출

	기관명	인천 남동소방서	서 부서명 예방안전과		담당자	소방장 김헌성
제출처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			전화번호	032)870-5268
	전자우편	kimhs119@korea.kr			팩스번호	032)870-5218
제출기간	2021년 12월 1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인천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팀(032-870-5268, FAX 032-870-5218)
-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1부.
 - 2.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2차 조치명령서
 - 3.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연 번	소유자	주 소	비고
1	강*미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	반송
2	고*옥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로40번길 ***	반송
3	고*숙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4	구*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반송
5	김*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	김*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	반송
7	김*묵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22번길 ***	반송
8	김*옥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반송
9	김*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	반송
10	김*옥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11	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22번길 ***	반송
12	김*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13	김*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	반송
14	김*훈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864번길 ***	반송
15	김*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	반송
16	김*수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	반송
17	김*철	인천광역시 남구 서정로 ***	반송
18	김*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97번길 ***	반송
19	김*숙	전라북도 군산시 백릉로 ***	반송
20	김*훈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21	김*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	반송
22	김*석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	반송
23	나*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남로34번길 ***	반송
24	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반송
25	문*익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반송
26	민*도	서울특별시 용산 이촌동 ***	반송
27	민*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	반송
28	민*홍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29	박*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30	박*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	반송
31	박*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32	박*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33	박*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	반송
34	박*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아남로26번길 ***	반송
35	박*대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	반송
36	박*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	반송
37	배*선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	반송

연 번	소유자	주 소	비고
38	백*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남로34번길 ***	반송
39	서*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광신1길 ***	반송
40	선*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69번길 ***	반송
41	송*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	반송
42	송*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	반송
43	신*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44	신*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45	신*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반송
46	신*옥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반송
47	양*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48	오*수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	반송
49	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0	우*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반송
51	원*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2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동 ***	반송
53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4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5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6	원*종합건설원*두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	반송
57	유*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반송
58	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61	윤*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반송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9	이*환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	반송
70	이*희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반송
71	이*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	반송
72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3	이*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74	이*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75	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연 번	소 유 자	주 소	비고
76	이*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268번길 ***	반송
77	이*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반송
78	이*구	충남 금산군 금성면 ***	반송
79	이*필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반송
80	이*엽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382번길 ***	반송
81	이*분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	반송
82	이*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	반송
83	이*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	반송
84	임*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85	임*규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	반송
86	임*철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반송
87	장*승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	반송
88	장*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89	장*영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90	장*조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	반송
91	전*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반송
92	전*수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	반송
93	정*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94	정*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	반송
95	정*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반송
96	정*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반송
97	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382번길 ***	반송
98	정*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	반송
99	정*철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100	정*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101	정*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반송
102	정*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	반송
103	정*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	반송
104	정*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105	정*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106	조*덕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	반송
107	조*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	반송
108	조*래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201번길 ***	반송
109	조*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	반송
110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	반송
111	조*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112	조*환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	반송
113	조*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반송

연 번	소 유 자	주소	비고
114	청***건설민*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	반송
115	청***건설민*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116	최*근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117	최*혁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	반송
118	최*구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반송
119	최*준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	반송
120	최*철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반송
121	최*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122	추*호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	반송
123	한*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	반송
124	한*환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반송
125	한*령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반송

[붙임 2]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불이행에 따른 2차 조치명령서					
점 검 대 상	점 검 대 상 청실프라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남로 26번길39)				
관 계 인	강 〇 미 등 125명				
소방시설 등의 종류	지 적 사 항	관 련 법 령			
소화기구	 ○ 다음 장소 분말소화기 충압 불량 4개소 - 1층 마트 내 우측 비상구 앞 1개 (미완료) - 3층 321호 앞 복도 1개 (미완료) ○ 1층 좌측 계단실 전 복도 앞 분말소화기 내용연한 초과로 조치요함 (미완료) 				
소화설비	 ○ 다음 장소 소화전함 내 호스 경화로 교체요함 6개소 - 3층 좌측 소화전 2개 (미완료) ○ 다음 장소 스프링클러 헤드 반경 불량으로 증설요함 3개소 - 1층 마트 출입구 앞 1개, 마트 내 사무실 1개 (미완료) - 3층 마트 내 안 쪽 소상고 앞 1개, 탈의실 앞 2개 (미완료) ○ 3층 알람밸브 압력스위치 템퍼스위치 선로 분리 상태로 조치요함 (미완료) ○ 지하2층 프리액션밸브 2차측 밸브 잠금상태 (미완료) ○ 3층(디토폴리스(오피스텔)) 전용 스프링클러 엔진펌프 배터리 불량 1개 (미완료) 	NFSC 101			
경보설비	○ 3층 (청실프라자)소사무실 복도내 감지기선로간선 상태 불량으로 조치요함 - 전선관 사용 안함 (미완료) - 쫄대 및 선로만 포설된 상태 ○ 3층 (청실프라자)소사무실 복도 내 감지기 적응성 불량 3개소(열->연기) (미완료) ○ 좌측 계단실 옥탑 연기감지기 이설요함(미완료) - 벽면으로 60cm이상 떨어뜨릴 것 (현재 샌드위치 판넬 창고랑 10cm 이내인 상태) (미완료) ○ 다음 장소 발신기 누름 스위치 불량 4개소 - 지하2층 주차장 경사로 앞 발신기 1개, 좌측 계단실 내 발신기 1개 (미완료) - 1층 마트 내 우측 발신기 1개 (미완료) - 3층 좌측 소화전 1개 (미완료) ○ 비상방송설비 연동불량 상태 - 상가 (지하2층~지상3층) 내 비상방송 출력시 연동 불량상태 (미완료) - 수신기에서 비상방송설비 엠프로 신호는 넘어가는 상태 (미완료)	NFSC 102 NFSC 103 NFSC 203 NFSC 202 NFSC 301 NFSC 303			
피난구조설비	○ 3층 (청실프라자)소사무실 복도 내 유도등 선로 간선상태 불량으로 조치요함 - 전선관 사용안함 (미완료) - 쫄대 및 선로만 포설된 상태 ○ 3층 (청실프라자)소사무실 복도내 유도등 적응성 불량 3개소 (피난구->통로) (미완료) ○ 다음장소 피난구유도등 미설치 3개소 (미완료) - 1층 마트 출입구 1개 , 우측 계단실 출입구 1개 (미완료) - 3층 (청실프라자)소사무실 출입구 1개 (미완료)				

소 방 시 설	지 적 사 항	관련 법 령
등의 종류	시 식 사 양	판단합병
피난구조설비	○ 1층 마트 내 거실통로유도등 미설치 1개소 (양면, 방향) (미완료) ○ 다음장소 피난구유도등 점등불량 4개소 - 지하2층 발신기실 출입구 2개, 주차장 내 경사로 앞 1개 기계실 출입구 1개 (미완료) - 좌측계단 PH층 -> 3층 1개 (정방향) - 3층 -> 2층 1개 (우방향) (미완료) - 1층 -> B1층 1개 (좌방향) (미완료) - 1층 -> B1층 1개 (좌방향) (미완료) - 명1층 -> B2층 1개 (좌방향) (미완료) - 우측계단 B2층 -> B1층 1개 (좌방향) (미완료) - 1층 주차장 출입구 앞 경사로 1개(좌방향) (미완료) ○ 다음장소 통로유도등 철거상태로 조치요함 3개소 - 지하2층 ->경사로 사이 첫 번째 1개(전원불량) (미완료) - 지하2층 주차장 내 2개(전원불량) (미완료) ○ 다음장소 피난구유도등 외관상태 불량으로 조치요함 - 1층 좌측계단실 출입구 1개(외면표지 탈락) (미완료) - 3층 좌측 계단실 출입구 1개(외면표지 변형) (미완료) ○ 다음장소 비상조명등 점등불량 4개소 - 3층 디토폴리스(오피스텔) 내 알람밸브실 앞 1개, 우측 출입구 1개 (외연표 315호 사이 1개, 303호 - 304호 사이 1개 (미완료) ○ 다음장소 비상조명등 예비전원 불량 2개소 (5v-900mAh) - 3층디토폴리스(오피스텔)내 317호 우측 1개 309호 옆 1개 (미완료)	NFSC 303 NFSC 304 소방시설법 10조
기타	 ○ 다음장소 방화문 도어체크 미설치 2개소 - 좌측 계단실 쪽 3층 출입구 2개(방화문 양쪽) (미완료) ○ 다음장소 방화문 도어체크 탈락상태로 조치요함 3개소 - 우측계단실 쪽 지하2층 출입구 1개 (미완료) - 3층 출입구 2개 (미완료) 	

끝.

[붙임 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의견제출		丁 亚	(전화번 <u>:</u>	호:)		
의건제울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남동소방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6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1. 하천의 명칭: 아라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본부장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1로 41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
 - 면 적: 800 m²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공공용상수관로 신설
 - 내 역: 상수관로 D=80mm, L=400m
- 5. 점용기간: (당초) 2016.08.31. ~ 2021.08.30.

(변경) 2021.08.31. ~ 2026.12.31.